

기초계약이행을 위한 청구보증 활용에 관한 연구

- 청구보증의 성립과 지급청구 요건을 중심으로 -

전 재 응*
유 광 현**

-
- I. 서 론
 - II. 청구보증의 특성과 한계 분석
 - III. 청구보증의 성립과 지급청구 요건 주요법리 고찰
 - IV. 청구보증의 지급 관련 대응방안 고찰
 - V. 결 론
-

주제어 : URDG 758, 청구보증, 지급청구, 기초계약

I. 서 론

국제무역거래는 법역이 다른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당사자들간의 거래로서 법적인 제도와 관습의 차이로 인하여 일반적인 국내거래보다 다양한 위험과

*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 주저자

**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국제거래에서 계약 불이행 소지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 계약서에 상세히 규정하여 분쟁발생시 당사자 간 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원만한 문제해결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상대방의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한 신뢰와 당사자 간의 계약의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고자 은행의 보증발행을 활용하기도 한다.

은행의 청구보증은 해외건설계약이나 턴키계약, 장기공급계약, 선박수출계약 등 대형 국제거래에서 시공자나 수주자, 공급자의 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또는 불완전이행에 대한 담보장치로써 발주자나 구매자를 보호하고자 발행된다. 이는 계약의 규모나 특성상 대금지급 과정이 복잡하고 계약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계약 불이행 위험이 높은 분야의 기초계약 체결시에 청구보증서의 제출이 요구되며, 이의 발행으로 보증신청인은 기초계약을 수주하게 된다.

이러한 청구보증은 전통적인 보증이 가지는 부종성과 보충성이 배제되고 기초계약과 별개로 독립성의 원칙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청구보증은 채무자의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경우 불이행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수익자에게 신속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은행들의 예측에 따르면 모든 청구보증과 보증신용장에서 실제 지급 청구가 이루어지는 비율은 대략 3~5% 또는 이보다 적은 상황이다.¹⁾ 이러한 사실로 볼 때 기초계약 당사자들이 청구보증을 제공하는 주목적이 기초계약의 체결과 계약 이행을 위해 청구보증을 활용할 뿐이지, 계약 불이행시 지급청구를 하려는 원래의 청구보증의 목적을 이용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추정된다.

한편 청구보증서 발행으로 인해 보증신청인은 계약조건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증서 조건에 일치하면 대금이 지급되는 위험을 인정한 것이 된다. 반면에 수익자의 입장에서도 청구보증의 지급특성으로 부당한 청구의 가능성은 존재하며 수익자가 부당한 청구를 함으로써 얻게 될 경제적 이득과 대외신인도 하락이라는 위험을 보유하게 된다. 또한 실질적 청구요건이 명백한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부당한 청구를 하여 청구보증 거래의 효율성을 위협하는 한계점도 지니고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증신청인은 보증서

1) Roeland F. Bertrams, *Bank Guarantees in International Trade*, Fourth Edi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13, p. 285.

지급청구 요건과 관련된 규정을 숙지하여 수익자의 부당한 청구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초계약을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수익자 입장에서는 보증신청인의 기초계약 불이행시 보증금을 청구하기 보다는 보증서 지급조건을 활용하여 기초계약 이행을 위한 청구보증 규정의 활용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청구보증 고유특성으로 인한 부당한 지급청구에 대한 지급예외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청구보증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증서 지급조건에 기재될 관련 규칙을 숙지하여 당사자간 이해관계를 반영한 지급조건 협의를 통해 계약적 위험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구보증의 성립과 기초계약이행을 위한 지급청구 조건에 관련된 청구보증의 준거규칙인 URDG 규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상술한 연구 목적을 위해서 본 연구는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하였다. 제2장은 청구보증의 메커니즘과 본질적, 계약적 특성을 검토하고 지급특성상 한계점을 살펴보고 관련 선행연구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3장은 청구보증의 핵심사항인 기초계약 당사자가 계약이행을 위한 지급약정 관련 법리와 보증서상에 기재될 지급조건을 청구보증의 준거규칙 조항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제4장은 청구보증서 지급조건을 근거로 하여 3장에서 논의된 주요 법리에 대한 유의점 및 대응방안을 제시²⁾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초계약이행을 위한 청구보증서의 지급요건 활용에 대하여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Ⅱ. 청구보증의 특성과 한계 분석

1. 청구보증의 메커니즘

청구보증(demand guarantees)은 기초계약상 채무자의 계약이행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수익자에게 발행된 보증으로써 채무자의 불이행 발생 시

2)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실제적인 판례나 실무사례 관련된 자료가 없어서 청구보증통일규칙과 청구보증 및 독립보증에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중심으로 한 문헌중심의 이론적 접근방법을 통해 대응방안을 고찰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갖고 있다.

에 수익자는 지급청구서나 보증서에 명시된 기타서류를 보증의 유효기간 내에 기재된 조건에 일치하는 제시로 지급청구를 하면 그 기초계약과는 독립적으로 수익자에게 일정한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보증인의 지급약정을 의미한다.

1) 직접보증(3자보증)

청구보증에서 직접보증(direct guarantee)의 경우 지시당사자³⁾와 보증인⁴⁾ 및 수익자⁵⁾ 모두 세 당사자가 개입된다. 첫째, 보증신청인(applicant)⁶⁾은 기초계약의 채무자로서 자신의 채무를 피보증 채무로 하여 보증의 발행을 의뢰하는 지시당사자이다. 둘째, 보증인(guarantor)은 자신의 고객인 보증신청인을 위하여 보증을 발행하는 은행, 기타의 당사자이다. 셋째, 수익자(beneficiary)는 기초계약의 상대방(매수인 또는 발주자)으로서 당해 보증의 혜택을 받는 당사자이다. 보증의 양당사자는 보증인과 수익자가 되며, 기초계약의 당사자는 보증신청인과 수익자가 된다.

3) URDG 758 제2조, 지시당사자(instructing party)는 “구상보증인 이외의 자로서, 보증이나 구상보증의 발행을 지시하며, 보증인에 대하여 또는 구상보증의 경우에는 구상보증인에 대하여 상환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한다.” 또한 URDG 758은 보증신청인과 지시당사자에 대하여 양자의 정의를 분리하여 표현하고 있다. 실무상 청구보증의 이용에서 양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보증신청인의 신용이 좋지 않은 경우 실제 보증발행을 요청하는 당사자는 보증신청인의 본사가 되어 지시당사자와 보증신청인이 다른 경우도 있다.

4) URDG 758 제2조, 보증인(guarantor)은 “보증을 발행하는 자를 의미하며, 자신의 계산으로 그렇게 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보증인은 보증을 발행하는 자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은행이 보증인 또는 구상보증인이 된다. 하지만 법인인 일반기업, 보험회사, 또는 개인과 같이 은행이 아닌 자가 청구보증 또는 구상보증을 발행할 수 있다. 청구보증에 관하여 논하는 본고에서는 보증은행을 ‘보증인’ 또는 구상보증은행을 ‘구상보증인’이라 부르기로 한다.

5) URDG 758 제2조, beneficiary means the party in whose favour a guarantee is issued. 기초계약에 따라 수입자, 매수인, 발주자, 도급인, 채권자의 명칭으로도 사용된다.

6) 직접보증의 구조에서는 지시당사자와 보증신청인이 동일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또한, 원채무자(account party)라고도 한다. 기초계약에 따라 수출자, 매도인, 수주자, 수급인, 채무자의 명칭으로도 사용된다.

2) 간접보증(4자보증)

수익자는 해외에 소재하는 보증인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수익자는 자국 내 은행이 발행한 보증서를 요구하는데 이때 간접보증 형태를 활용하게 된다. 만일 보증신청인이 수익자 국가에 소재하는 은행과 거래관계가 있지 않는 경우에, 보증신청인은 수익자 국가에 있는 현지은행으로 하여금 보증이 발행되도록 자신의 거래은행에 보증발행을 요청하게 된다. 지시당사자, 구상보증인, 보증인, 수익자의 네 당사자가 보증에 개입되는 구상보증 형태로서 보증이 이루어진다.

2. 청구보증의 지급특성

1) 본질적 특성

가. 독립성

청구보증은 “본질상 그 기초관계와 발행신청으로부터 독립되며 보증인은 어떠한 면에서도 그러한 관계와 관련이 없고 그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규정에 의하여 보증상 기초관계에 관한 언급이 있어도 보증의 독립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⁷⁾ 따라서 청구보증의 지급의무와 수익자의 지급청구권은 전적으로 보증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를 뿐이며, 청구보증은 입찰조건이나 기초계약으로부터 단절된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이다.⁸⁾

나. 서류에 의한 거래

서류거래의 추상성(abstraction)은 청구보증 거래가 서류에 의한 거래라는 것이다. 보증금액과 보증기한, 지급조건, 보증의 종료 등은 보증서 자체의 조건과 보증서에 명시된 지급청구와 서류제시에 의존한다. 서류제시로 보증금의 지급청구나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자연히 지급 및 상환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보증서조건과 서류의 일치성 여부에 달려 있다.⁹⁾ 따라

7) URDG 758 제5조 제a항.

8) URDG 458 제2조 제b항.

9) 김선국, “독립적 은행보증의 법리 : 그 기본특성을 중심으로”, 재산법연구, 한국재산법학

서 보증인이 보증금 지급여부를 결정할 때 유일한 판단대상은 서류밖에 없으며, 제출된 서류에 대한 외부적 사실관계는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¹⁰⁾

다. 엄격일치의 원칙

신용장 거래는 서류의 거래로부터 ‘엄격일치의 원칙’(doctrine of strict compliance)이 파생되며¹¹⁾ 은행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청구보증의 경우에도 신용장의 엄격일치의 원칙이 더욱더 강조된다. 보증인은 수익자에 의하여 제시된 서류가 보증의 조건과 엄밀하게 일치하는지를 점검하여 문면상 일치할 경우 대금을 지급한다.

2) 청구보증의 계약적 특성

청구보증은 제3자가 개입하여 채무자의 불이행을 보증하는 계약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¹²⁾ 이러한 경우에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고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인수한다는 내용을 함의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가. 일차적 주채무 부담 행위

청구보증은 추상적 지급약속이며 이러한 지급약속이 기초계약과 관련하여 수익자가 입는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또한 보증신청인과 수익자 사이를 기초계약으로부터 단절시키는 지급약속이다. 형식면에서는 보증인과 수익자 사이의 1차적 약속(primary undertaking)이며 주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약속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청구보증을 통상의 보증과 구별하며 청구보증의 채

회, 제25권 제1호, 2008, p. 310.

10) Michael Rowe, *Guarantees: Standby Letter of Credit and other Securities*, Euromoney Publication, 1987, p. 90.

11) Henry Harfield, *Bank Credits and Acceptances*, 5th ed., Ronald Press Company, New York, 1974, pp. 71~72.

12) 김선국, “독립성 은행보증의 독립성 -대판 1994.12.9선고, 93다 43873판결을 중심으로-”, *경남법학*, 경남대학교법학연구소, 제11집, 1996, pp. 283~290.

무가 1차적 특성임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1차적으로 보증신청인이 이행해야 하며 보증신청인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익자가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그 근거는 URDG에서도 채무자의 실제적인 불이행(actual default)이 요구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¹³⁾

나. 금융채무의 담보행위

청구보증은 금융채무의 권리담보기능으로 담보력이나 신용이 부족한 기업에게 은행의 신용으로 대체하고 그 권리를 담보할 목적으로 담보행위를 함으로서 국제무역 거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종래의 보증채무의 내용은 주 채무와 동일하나 청구보증 채무는 기초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기 때문에 보통은 금전 채무로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수익자는 기초계약의 이행을 보장받기 위하여 청구보증을 요구하나 주채무자의 불이행이 있으면 보증은행에게 기초계약상의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에게 발생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해진 일정금액의 지급을 청구한다.

3. 청구보증의 지급조건의 한계 및 선행연구

이상과 같은 청구보증의 메커니즘과 지급 특성으로 인해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청구보증은 보증신청인의 계약이행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며 보증신청인의 계약 불이행시 수익자는 지급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청구보증에서 보증인은 보증신청인이 기초계약상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금지급을 보장하는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화환신용장의 지급청구의 조건과 구별되고 있다.

둘째, 청구보증은 물품공급 또는 프로젝트 완공에 대한 보증신청인의 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장치로서 발행되지만, 수익자 입장에서 보증신청인의 계약 불이행시에 계약이행을 보장하는 보증의 조건을 원하지만 현실적이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제로 인하여 수익자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받기를 원하고 있다.¹⁴⁾ 청구보증은 보증신청인의 불이행에 대한 손해담보의 성격에

13) 김선국, 전계논문, p. 306.

14) 김상만, 국제거래에서의 독립적 은행보증서, 신인류, 2002, p. 34.

따라 담보의 조건은 보증신청인을 대신하여 계약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며, 계약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증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셋째, 청구보증은 부종성이 배제되어 있어서 보증인이 수익자의 지급청구에 대하여 보증신청인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실제로 의무불이행이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된 서류와 불이행 사실 확인의무가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익자가 보증신청인이 기초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증거 없이 단순히 보증에 근거한 지급청구는 수익자의 부당한 청구 행위가 된다. 또한 독립성의 원칙이 인정되어 보증신청인이 기초계약에 의한 자신의 항변을 보증인에게 제기할 수 없으므로 부당한 청구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지급청구의 한계점을 갖고 있는 청구보증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개정사항, 지급청구, 서류규정으로 분류하여 검토했을 때 아래의 표와 같다. 그 내용은 청구보증의 고유특성으로 인한 부당한 지급청구에 대한 지급 예외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기초계약을 근거로 발행되는 청구보증에서 당사자 이해관계를 반영한 지급약정과 기초계약의 이행을 위한 지급조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표 3〉 선행연구 내용검토

구 분		연 구 내 용
개 정 사 항	정 홍 식 (2008)	개정 URDG 3차 초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방향을 소개함. 기존의 관련 법규와의 관계를 검토하고 URDG458과의 유사성과 개정 내용의 특징을 제시한 연구임.
	박세운外 2인(2009)	URDG 제3차 초안을 중심으로 개정의 배경과 경과 및 개정내용을 소개함. 개정초안이 URDG 458의 내용을 승계하고 UCP 600과 ISP98의 상호 관련성을 반영했다는 점을 확인함.
	박세운外 2인(2010)	개정 URDG758의 전반적인 규정을 소개하고 개정사항을 검토하고 URDG758이 실무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있다는 연구임.
	박 세 운 (2010)	URDG758의 제정과 개정현황을 살펴보고, UCP 600 규정과의 차이점을 검토하고 청구보증서 적용시 유의점을 제시한 연구임.
	박 석 재 (2011)	청구보증의 개념과 준거법을 고찰하고 URDG 758의 규칙 적용에 관련하여 총칙, 지급청구, 통지 및 조건변경, 불가항력 및 양도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실무상 유의점을 제시함.

	박세운·한기문 (2011)	URDG758과 ISP98과의 기본규정, 심사부분, 기타 내용으로 분석하고, 관련 당사자의 규칙 선택과 적용상 유의점을 제시함.
지 급 청 구	채진익 (2011)	지급청구와 관련하는 쟁점과 문제점을 은행보증거래의 절차와 제도에 한정하여 유의점과 대응방안을 연구함. 보증수익자의 부당청구 문제를 보증서 개설이후 관심을 갖고 업무관행과 관련한 국제규범을 이해할 것을 제시함.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됨.
	허해관 (2011)	URDG758의 청구보증상 청구방법, 제시서류의 문제를 지급청구와 보증금 지급에 한정하여 고찰함. 보증서상 지급조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김동윤 (2011)	보증신용장거래에서 수익자의 부당한 지급청구에 한정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법제의 정형화와 발행은행의 위험분산 방안을 제시함. 청구보증상 지급청구와 관련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오원석外 2인(2010)	청구보증상 지급메커니즘의 특성과 관련당사자의 리스크와 대처와 협상의 유의점을 보증신청인과 보증인의 입장에서 연구함. 청구보증의 성립과 지급약정에 관련한 연구가 필요함.
서 류 규 정	김선국 (2000)	독립추상성과 관련된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유효성을 검토함.
	박세운 (2011)	신용장, 보증신용장 및 청구보증서의 동일규칙간의 유효기일 규정을 검토하고 실무적 유의점을 제시함.
	박세운外 1인(2011)	신용장 및 청구보증에서 비서류적 조건의 차이점을 검토하고 ICC 은행위원회의 공식의견과 판례를 분석하여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

Ⅲ. 청구보증의 성립과 지급청구 요건 주요법리 고찰

1. 청구보증의 지급약정에 관한 주요법리

1) 보증금액의 변경

청구보증의 관련 당사자들은 기초계약의 특정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보증금액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보증신청인은 기초계약의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보증금액의 증액을 요구해야 하는 경우와 보증신청인이 기초계약상 의무를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기초계약상 대금이 분할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에 단계적 감액 규정이 이용되고 있다.

만약 보증서 내용에 보증금액의 변경 조항을 포함하고자 한다면 첫째, 보증금액의 변경이 발생하는 특정한 일자를 명시하거나, 둘째, 보증금액의 변경을 유발하는 사건(occurrence of the event)을 특정하여 이를 표시하는 서류를 보증서상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청구보증에서 보증금액이 감액되는 요건은 첫째, 수익자가 일부청구 규정에 따라 보증금의 일부를 지급 받는 경우에 그 액수만큼 보증금액이 감액된다. 둘째, 보증금액의 변경사건이 발생한 경우로서 특정일자가 되면 감액되거나 감액을 초래하는 특정한 사건의 발생을 명시하는 서류가 보증인에게 제시되는 때 보증금액이 감액된다. 셋째, 수익자가 일부 의무면제서의 제시로써 보증금액이 감액된다.¹⁵⁾

따라서 보증금액의 변경 규정을 명시할 경우에는 보증인이 보증서상에 명시된 조건으로 실제 외부적 사실을 스스로 조사할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하고, 또한 비서류적 조건에 해당되어 보증금액 변경 규정에 부적합하지 않도록 서류적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

2) 보증의 조건변경

수익자는 보증인의 조건변경을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조건이 변경된 보증에 따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기 전까지는 보증의 조건변경을 거절할 수 있다.¹⁶⁾ 또한 조건변경의 수락의사를 통지하거나 또는 변경된 조건변경의 수락 행위로서 보증에 일치하는 서류 제시로써 수락이 성립된다.

결국 보증인이 조건변경을 발행한 이후부터 수익자가 그 조건변경을 수락 또는 거절하기 이전에는 원래의 보증과 조건이 변경된 보증이 공존하는 상태

15) URDG 758 제25조 제a항, URDG 458 제8조 참조.

16) URDG 758 제11조 제c항.

에 있게 된다. 수익자가 조건변경의 거절을 통보를 하지 않고서 조건변경 이전의 보증서 조건에 일치한 서류를 제시하였다면, 보증인은 그 제시를 조건변경 이후의 보증서조건 불일치로 간주하여 지급거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조건변경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보증인과 수익자간에 동의가 이루어진 조건변경이 수익자에게 효력을 갖는다.¹⁷⁾ 그 조건변경의 효력과 구속력은 보증인이 보증의 조건변경을 발행한 때부터 수익자가 조건변경을 거절하는 때까지 그 조건변경은 취소가 불능하며 구속력을 갖게 된다.

또한 보증의 조건변경에 대하여 일부수락(partial acceptance)을 허용하지 않는다.¹⁸⁾ 즉 수익자는 조건변경의 일부를 수락하거나 나머지 일부분을 거절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¹⁹⁾ 수익자는 나머지 조건부분을 고려하여 조건변경의 일부 수락을 할 수도 없고 결정을 추후로 미룰 수도 없으며, 어떤 부분을 거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일부수락으로 간주되어, 그 일부수락으로 인해 전체 조건변경이 거절로 취급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3) 지급청구권의 양도 및 보증금 채권의 양도

가. 지급청구권의 양도

청구보증은 보증서에 명시된 기존 수익자의 지급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보증의 양도(transfer of guarantee)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서상에 “양도가능(transferable)”이라는 표현이 명시된 때에는 양도가 가능해진다.²⁰⁾

청구보증의 지급청구권이란 단순한 서류제시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에 URDG는 “기초관계상 양도수익자(transferor)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수익자(transferee)가 취득하였다는 서명된 진술서를 양도수익자가

17) URDG 758 제11조 제b항.

18) URDG 758 제11조 제e항.

19) Georges Affaki and Roy Goode, *Guide to ICC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URDG 758*, ICC Pub. No. 702E, 2011, p. 85.

20) URDG 758 제33조 제a항, 보증신용장의 경우에 양도가능하다는 표현으로 “transfer”는 보증의 양도(transfer of guarantee), 즉, 지급청구권양도(transfer of drawing rights)를 의미하고 “assignment”는 보증금채권양도(assignment of proceeds)를 의미한다. ISP98 제6.01조 제a항 참조.

보증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지급청구권의 양도가능성을 서류적으로 제한하고 있다.²¹⁾

한편 청구보증은 기초계약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단순히 보증서를 양도하는 것으로 양도되지 않으며, 지급청구권은 전부양도(entirety transfer)만을 허용한다. 지급청구권 양도의 절차는 보증서상 수익자(양도수익자; transferor)가 보증인에게 양도요청을 하고 그 요청에 따라 보증인이 양도승인을 결정한다.²²⁾ 이때 수익자가 이중양도를 하거나, 보증금이 지급되어 소멸되거나, 변조된 보증서로 인하여 지급청구권양도에 사기행위가 개입될 수 있다.²³⁾ 그러므로 보증인은 보증서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²⁴⁾

나. 보증금채권의 양도

수익자가 취득하는 보증금채권은 수익자의 지급청구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적 결과물이며, 수익자는 이러한 보증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수익자의 보증상 지급청구권은 오직 수익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보증금채권의 양도만으로 보증상 지급청구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또한 지급청구권의 양도는 화환신용장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용된다는 점에서 신용장의 양도와는 구별된다. UCP 600은 양도가능(transferable)의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대금에 관한 권리만 양도 받는 것이며 신용장에 따라 행사하는 권리 양도와는 관련이 없다.²⁵⁾ 즉 청구보증에서 지급청구권 양도는 화환신용장 자체의 양도와 동일한 것이다. 화환신용장에서 분할청구 및 분할선적이 허용된 경우 제1수익자(양도수익자)에서 제2수익자(양수수

21) URDG 758 제33조 제d항 제ii호.

22) ISP98 제6.02조. 보증신용장의 경우 개설은행이나 양도은행으로부터 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URDG 758 제33조 제b항 참조.

23) 대한상공회의소·ICC Korea 국제금융위원회, ISP98 보증신용장통일규칙 공식번역 및 해설, 2008, p.183.

24) ISP98 제6.03조 제a항.

25) UCP 600 제39조.

익자)에게 분할양도와 전부양도 모두 허용되지만 신용장이 2번 양도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²⁶⁾

4) 지급통화

보증서에는 보증금액과 지급통화가 명시되므로 보증인은 일치하는 지급청구에 대하여 보증서에 명시된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²⁷⁾ 일반적으로 보증서에 명시된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지만, 보증인이 통제할 수 없는 장애로 인하여 보증서에 명시된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또는 지급장소의 법률상 보증서에 명시된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불법인 경우에는 지급장소의 통화(place of payment)로 지급할 수 있다. 만약 보증금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보증인이 지급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수익자는 지급이 이루어져야 했던 때에 또는 실제 지급되는 때에 적용 가능한 환율에 따라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²⁸⁾

5) 지급청구의 시기

가. 보증의 만료 요건

보증의 만료(expiry)는 보증서에 규정된 조건과 일치하는 지급청구가 제시되어야 하는 시기를 의미한다.²⁹⁾ 보증서상에 만료일(expiry date)과 만료사건(expiry event) 양자가 모두 명시된 경우에는 그 중에서 먼저 발생한 시기에 만료가 된다.³⁰⁾ 만료일은 서류제시가 허용되는 최종일로 보증서에 명시된 일자를 의미하며, 만료일자를 명시하는 방법은 보통 달력상의 특정일자를 기재하

26) UCP 600 제38조 제d항. 신용장 자체의 양도는 제2수익자가 제3수익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다. 신용장을 양도하였지만 제2수익자(양수수익자)의 요청으로 신용장 양도 취소 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양도로 간주되지 않는다. Opinion R.486 참조.

27) URDG 758 제21조.

28) URDG 758 제21조 제c항.

29) 오원석·허해관·김중년 공역(Roy Goode 저), 전거서, p. 120.

30) URDG 458 제22조.

여 표시할 수 있다. 만료사건이 발행하였다는 서류가 제시된 시점부터 보증이 종료되고 수익자의 지급청구권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일치하는 지급청구나 제시가 되기 위해서는 만료이전에 보증서 조건에 따라 지급청구나 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³¹⁾

나. 보증의 종료

보증서에 명시된 서류를 반환하거나 수익자의 의무면제서 제출로 보증이 종료되도록 규정을 할 수 있다. 보증의 종료시기는 ① 만료시,³²⁾ ② 보증상 지급가능한 금액이 소진된 때, ③ 보증인의 의무를 면제하는 수익자의 서명된 의무면제서가 보증인에게 제시된 때, ④ 보증금액의 감액 요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증이 종료되며, 청구보증은 보증장의 반환이나 기타서류의 반환여부와 상관없이도 종료된다.³³⁾ 보증에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보증이나 구상보증에서 만료일이나 만료사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은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종료되고, 구상보증은 보증의 종료일로부터 달력상 30일 후에 종료된다.³⁴⁾

한편 보증인은 보증이 종료되거나 보증금이 감액된 사실을 보증신청인 또는 지시당사자에게 통지해야할 의무를 부담하며,³⁵⁾ 이러한 보증의 종료통지 규정으로 보증인과 보증신청인이 당해 보증의 종료 및 감액의 사실을 재 확인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31) URDG 458 제19조.

32) URDG 758 제25조 제d항. 만약 보증의 만료일이 지급청구의 제시장소에서 비영업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만료일은 그 제시장소에서 다음 첫 영업일까지 연장이 된다.

33) URDG 458 제23조, 보증에 명시된 실효규정과는 별도로, 보증은 당해 보증장이 그 보증인에게 반환되거나 수익자가 서면으로 보증채무를 면제하는 때에 소멸하며, 후자의 경우에 당해 보증장과 그 변경장의 반환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URDG 758 제25조 제b항 참조.

34) URDG 758 제25조 제c항.

35) URDG 458 제25조.

2. 청구보증의 지급청구와 사후처리에 관한 주요법리

1) 청구보증의 정당한 청구에 대한 법리

가. 일치하는 지급청구

보증신청인이 기초계약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행 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보증인에게 제시하는 지급청구를 수익자에 의한 정당한 청구(fair calling)라고 한다. 이때 수익자가 보증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지급청구서와 보증서상의 지급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제시와 관련될 뿐 주채무자가 실제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

수익자는 지급청구를 위한 서류 제시에서 보증에 관련된 보증인의 참조번호(a reference number)나 정보사항(information)을 기재하거나³⁶⁾ 또는 제시가 어느 보증 하에서 제시되는 것인지를 명시하여 한다. 이러한 행위를 보증의 특징이라고 한다. 수익자는 보증의 특징이 지연되어도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않음을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보증의 특징을 누락하여 제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보증인의 지급청구 심사기간은 그 특정일(date of identification)부터 시작된다.³⁷⁾

나. 제시방법

청구보증상 제시는 보증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들을 모두 구비하여 완전함을 갖추어야 일치하는 제시가 된다. 만약 제시인이 제시 당시에 불완전한 제시를 할 수 밖에 없어서 추후에 제시가 완결될 것임을 예고하였다면, 추후에 완결된 시점에 일치하는 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시의 완결은 반드시 보증의 만료 이전까지 일치하는 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³⁸⁾ 만약에 만료 이전까지도 완결되지 않는다면 당해 제시는 불일치한 제시로 판단되어 보증인이 별도의 하자 통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청구보증에서 제시형태를

36) 기초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당사자, 기초계약 체결일, 입찰예정일, 계약서번호 등과 같은 사항을 명시하게 된다.

37) URDG 758 제14조 제f항, 각 제시에서는 보증에 관한 보증인의 참조번호를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제시가 이루어지는 보증을 특정해야 한다.

38) URDG 758 제14조 제b항.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전자적 형식의 제시는 인정되지 않으며 결국 종이서류 방식이 우선됨을 인정하고 있다.³⁹⁾

다. 지급청구서와 보강진술서 제시

청구보증에서 수익자의 지급청구를 ‘서면에 의한 지급청구’로 요구하는 이유는 수익자에게 발생될 수 있는 불확실한 사고에 대한 보호책이며⁴⁰⁾, 또한 수익자의 부당한 청구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공하면서 청구보증의 서류적 성격과 신속한 지급이행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청구보증에서 지급청구는 의무불이행 진술이 그 지급청구서에 기재되거나 또는 별도의 서류로 첨부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⁴¹⁾ 그 진술서에는 기초계약상 보증신청인의 의무위반의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⁴²⁾ 또한 보증서상에 명시한 서류와 지급청구서가 서면으로 제시되어야 지급청구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⁴³⁾ URDG는 지급청구나 보강진술은 수익자가 지급청구를 제시할 권리를 갖는 일자 이전의 일자로 일부(日附)되어 제시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⁴⁴⁾

라. 지급청구의 방법

보증금액의 소진에 의한 종료의 경우 보증상 수익자가 청구할 수 있는 보증금액의 한도는 그 보증에서 일부청구 또는 수차청구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금액만큼 감액되며 이용가능한 보증금액이 전액 소진되면 보증은 종료된다. 보증상 일부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수차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URDG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⁴⁵⁾

39) URDG 758 제14조 제e항.

40) N. D. George, “Four report on guarantee and the URDG revision”, *DCInsight, Vol 16 No 2*, April-June 2010, p. 12.

41) N. D. George, “Should a ‘statement of breach’ be required in the URDG”, *DCInsight, Vol 15 No 2*, April-June 2009, p. 16.

42) URDG 758 제15조 제a항.

43) URDG 458 제20조 제a항.

44) URDG 758 제15조 제d항.

일부청구(partial demand)는 보증상 이용가능한 보증금 전액 중에서 일부만을 청구하는 것을 일부청구라고 한다. 수차청구(multiple demand)는 보증상 2회 이상의 지급청구가 가능한 것을 수차청구라고 한다. 수차지급청구를 금지하였더라도 보증인이 그 지급청구에 대하여 불일치를 이유로 거절한 경우에 수익자는 하자를 보완하여 유효기간 이전에 다시 지급청구가 가능하다.⁴⁶⁾

마. 보증인의 심사의무

청구보증에 따른 보증인의 서류심사와 그 판단은 서류거래를 원칙으로 하며, 지급의무는 지급청구서 및 보증서상에 명시된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받고 그 보증조건과 제시만을 기초로 문면상(on their face; on the face of documents) 일치하면 보증금을 지급하게 된다.⁴⁷⁾ 여기서 문면상은 외관상의 일치성으로만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⁴⁸⁾

보증인은 보증금 지급 후에 서류의 위조나 사기적 변조 또는 허위 혹은 부정확한 사실이 발견되어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보증인은 보증서의 발행에 근거가 되는 기초계약을 알아야 할 의무도 없으며 서류만 취급해야한다는 것을 은행과 법원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⁴⁹⁾ 제시된 서류상에 기재된 정보를 심사하는데 보증인은 부주의 또는 태만하지 않고 성실하고 합리적인 주의를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⁵⁰⁾ 제시된 서류들이 각기 다른 기초계약이나 의무이행을 참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서류들이 개별적으로 보증조건에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될지라도 이 경우에는 지급이 거절되어야 한다.⁵¹⁾ 보증인은 그 서

45) URDG 758 제17조.

46) URDG 758 제17조 제d항.

47) URDG 758 제19조 제a항 참조. 대법원 1993. 12. 24. 93다15632; 대법원 1997. 8. 29. 96다37879.

48) Georges Affaki, *A User's Handbook to the URDG*, ICC Publication No. 631, July 2001, pp. 84~85.

49) Thomas Song, Chang-soon, "When discrepancies should and shouldn't matter", *DCInsight*, Vol 15 No 3. July-September, 2009, p. 12.

50) John F. Dolan, "Analyzing Bank drafted Standby Letter of Credit Rules, The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ISP98)", *Wayne Law Review*, Vol.45, 1999, p.1 887.

51) URDG 458 제9조.

류의 내용이 보증상 요구된 서류의 기능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밖에 일치성 심사요건에 일치한다면 서류를 제시된 대로 수리한다. 보증상 “요구되지 않은 서류”는 제시되어야 할 필요서류도 아니며 그 서류는 무시되고 제시인에게 반환될 수 있다.⁵²⁾

바. 지급청구의 심사기간

청구보증에서 보증인의 지급청구 서류의 심사기간은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그 규정을 배제하고 UCP 600의 서류심사 기간을 계수하여 “5영업일”로 규정하고 있다. 보증인이 제시된 서류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5영업일을 모두 이용할 수도 없다.⁵³⁾

보증인은 제시된 지급청구가 “일치하는 지급청구라고 결정하는 때”에 보증인의 지급의무가 발생되어 보증금의 지급시기가 된다.⁵⁴⁾ 가령 보증인이 지급거절권을 상실하여 지급해야하는 경우에 그 지급시기는 심사기간의 만료일이 된다. 보증금은 당해 보증을 발행한 보증인의 지점 또는 영업소에서 지급된다. 만일 보증상 다른 지급장소가 명시된 때에는 그 장소에 지급이 가능하다.⁵⁵⁾

사. 지급청구의 통지의무

보증인이 지급청구를 접수 받았다면 직접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인은 보증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간접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인은 구상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⁵⁶⁾ 통지내용에는 보증상 지급청구가 이루어진 사실과 보증상 지급이나 만료연장이 선택적으로 요청된 사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통지방법에 있어서 제한은 없지만 서면이나 전신 또는 전화 등 어떠한 통신수단도 허용되며 반드시 “지체없이”(without delay) 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증인이 수익자에게 보증금액을 지급하기 이전에 반드시 보증신청인에게 지급청구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지만 보증인이 지급이전에 미리 보증신청인에게

52) URDG 758 제19조 제d항.

53) URDG 758 제20조 제a항.

54) URDG 758 제20조 제b항.

55) URDG 758 제20조 제c항.

56) URDG 758 제16조, URDG 458 제17조 참조.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⁵⁷⁾

아. 각 지급청구의 독립성

URDG에서 “각 지급청구의 독립성”(separateness of each demand)은 ISP98 제3.07조의 ‘제시의 독립성’과 동일한 규정이다.⁵⁸⁾ 청구보증은 화환신용장의 실무상 활용이 다르기 때문에 기초계약상 보증신청인이 의무를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경우 수익자가 그 부분에 대하여 지급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차후 이행단계에서 보증신청인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수익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지급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⁵⁹⁾ 이러한 규정을 활용하여, 보증신청인은 어떤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최대보증금액을 명시한 보증서를 발행하기보다는 이행단계별로 보증서 발행을 통하여 각 단계에서 부담하는 채무금액을 줄일 수 있다. 지급청구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만일 보증서에 일부청구나 수차청구를 금지한다고 할지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⁶⁰⁾

자. 지급청구 제시서류의 특성

청구보증에서 지급청구시 수익자는 보증신청인이 계약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한 진술서를 수익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다. 수익자가 직접 작성하는 서류를 청구보증의 독립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기초계약상의 내용을 이유로 보증인이 지급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악용하여 사기나 부당한 청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57) 오원석·허해관·김중년 공역(Roy Goode 저), 전게서, p. 99.

58) ISP98 제3.07조, (a) 불일치한 제시를 하거나 그 제시를 철회하거나 혹은 예정 또는 허용된 다수의 제시 중의 어느 하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적시의 다른 제시나 적시의 재제시를 할 권리의 포기라 아니고 또한 그러한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이는 그 보증신용장에서 일부 또는 수차청구 또는 제시를 금지하고 있는지를 불문한다. (b) 일치하는 제시에 대한 부당한 지급거절은 보증신용장상 여타의 제시에 대한 지급거절이나 보증신용장의 이행거절로 되지 아니한다. (c) 불일치한 제시에 대하여 결제하는 것은 그 불일치 통지를 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여타의 제시에 관하여 보증신용장 조건의 포기라 되지 아니한다.

59) 대한상공회의소·ICC Korea, 전게서, p. 157.

60) URDG 758 제18조 제a항.

청구보증의 지급청구 서류는 소유권이 없는 비유가증권이다. 지급청구에 요구되는 불이행진술서는 보증신청인의 의무불이행 사실을 기재한 단순한 진술서에 불과하므로 유통성도 없고 유가증권도 아니다. 따라서 보증신청인이 지급 불능이나 상환거절시에 보증인은 채권확보방안이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청구보증상 보증인이 지급조건과 불일치하는 서류에 대한 지급은 지급된 금액만큼의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청구보증의 제시서류중 하나인 진술서는 형식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또한 해석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보증인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치성기준이 결여되어서 서류심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2) 청구보증의 부당한 청구에 대한 법리

가. 부당한 청구의 개념 및 가능성

청구보증에서 수익자가 보증신청인의 계약 불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또는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보증인에게 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부당한 청구(unfair calling)라고 한다.

부당한 청구에 따른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은 미국통일상법전(UCC) 제 5-109조 “기망적인 청구”, 독립보증 및 보증신용장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제19조⁶¹⁾ “지급의무에 대한 예외”, 제20조 “수익자의 사기적 행위에

61) 독립보증 및 보증신용장에 관한 UN협약 제19조. 보증인이 지급을 유보할 수 있는 사유는 (a) 어떠한 서류가 진정한 것이 아니거나 위조된 경우, (b) 지급청구 및 첨부서류에서 주장된 근거에 의하여 지급할 것이 아닌 경우, 또는 (c) 확약의 유형과 목적에 따라 판단할 때 지급청구가 생각할 수 있는 아무런 기초가 없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c)는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① 수익자를 담보하도록 의도된 확약상의 우발사고 또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음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경우, ② 본인/보증신청인의 기초적인 의무가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에 의해 무효로 선언된 경우(다만, 그러한 우발사고가 확약에 의해 담보되는 위험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 ③ 기초적인 의무가 수익자에게 만족스럽게 수행되었음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경우, ④ 기초적인 의무의 수행이 수익자의 고의적인 악행(wiful misconduct)에 의해 방해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⑤ 구상보증에 의한 청구의 경우, 구상보증의 수익자가 역보증과 관련된 확약의 보증인/보증신청인으로서 악의로(in bad faith)지급한 경우, 여기에서 확약이란 독립적 보증과 보증신용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석광현, “국제적 보증의 제문제”,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17권, 2002, p. 28.

대한 개설의뢰인의 구제에 관한 조항” 규정으로 독립성의 예외와 구제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 독립보증 및 보증신용장에 관한 UN협약은 지급청구에 있어서 사기나 남용이 명백하고 모든 사람에게 의하여 인지될 수 있는 경우 보증신청인은 지급을 거절할 의무가 있다.⁶²⁾

청구보증은 신속하고 무조건적인 대금지급이라는 특성에 따라 보증신청인의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수익자가 그 사실만을 통지하여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청구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나. 부당한 청구의 지급거절

청구보증의 독립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권리행사가 독립성의 원칙을 악용하는 ‘사기적인 청구’인 때에는 그에 대한 독립성의 예외를 인정하여 보증인은 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지급을 거절할 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부당한 청구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권리가 청구보증의 독립성이라는 고유의 성격을 훼손하여 기초거래나 청구보증서 활용에 제약을 받을 우려가 있어 독립성의 예외를 쉽게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독립성의 예외에 관하여 URDG 758은 각국의 국내법에서 해결할 사안으로 보고 관련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ISP98도 독립성의 예외에 관련된 사기적인 청구나 권리남용적 청구 문제를 다루는 체계적인 규칙을 제공하고 있지 않고 준거법에 따라야 할 사항임을 규정하고 있다.⁶³⁾ 보증인의 지급거절은 오직 중대한 사기나 현저한 권리남용의 존재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⁶⁴⁾

다. 비서류적 조건

보증서상에 조건을 명시하면서 그 조건의 준수여부를 표시하는 서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비서류적 조건이라고 한다. 청구보증에서 보증인의 의무는 기초관계에 관계되지 않고 보증조건에 일치하는 지급청구 및 기타 서류의

62) UNCITRAL, “Stand-by letters of credit and guarantee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A/CN.9/36(1), 1992, para.53, para.88.

63) ISP98 제1.05조

64) 대한상공회의소·ICC Korea 국제금융위원회, 전거서, p. 68.

제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다.⁶⁵⁾ 비서류적 조건에 관하여 URDG 458은 그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그에 따라 신용장업무와 청구보증업무 사이에 혼선이 있다는 문제점⁶⁶⁾을 수용하여 URDG 758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었다.⁶⁷⁾

3) 청구보증의 지급청구 사후처리에 대한 법리

가. 보증기간의 연장 또는 지급

보증인이 선택부 지급청구의 선택권을 갖고 있으며, 그 결정을 위하여 보증인은 그 지급청구를 수령한 날짜를 표시하면서 보증신청인이나 구상보증의 경우에는 구상보증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 그의 의사를 결정할 시간을 갖게 된다.⁶⁸⁾ 일치하는 지급청구 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나⁶⁹⁾ 일치하는 지급청구를 하고 그 지급청구 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선택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 그 요구가 허용된 경우에는 수익자는 그 지급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⁷⁰⁾

보증신청인의 기초계약 의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수익자가 지급청구 요청 대신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보증신청인에게는 기초계약이행을 위한 지급유예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65) 이행보증의 경우 보증인은 보증신청인의 기초관계상 불이행 여부에 관여되지 않는다. 입찰보증의 경우에도 보증인은 보증신청인이 입찰을 낙찰 받았는지 여부, 낙찰 받았지만 입찰을 철회하였는지 여부, 계약체결을 불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는다. URDG 458 제2조 제b항 참조.

66) 박세운·한기문·허해관, “ICC 『청구보증통일규칙』 개정 동향 : 제3차 개정초안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지, 제34권 제4호, 2009. p. 105.

67) Glenn Ransier, “URDG 758 has benefits for all parties”, DCInsight, Vol 16 No 2, April-June, 2010, p.11. 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ISP98의 비서류적 조건과 그 취지와 같으며 UCP 600 제14조 제h항 및 ISP98 제4.11조의 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68) URDG 758 제23조 제c항.

69) URDG 758 제23조 제a항.

70) URDG 758 제23조 제d항; ISP98 제3.09조 제b항 (iii).

나. 지급청구 통지의무

URDG는 보증인이 직접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 간접보증의 경우에는 구상보증인에게 지급청구서와 관련서류의 사본을 신속히 전달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⁷¹⁾ 서류전달 규정으로 인하여 보증신청인과 구상보증인은 보증상 지급청구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보증신청인 입장에서 불이행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수익자가 주장하는 불이행의 내용 또는 지급청구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보증신청인이나 구상보증인이 서류를 전달 받지 못하여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증인에 대하여 상황을 보류하거나 구상보증상 지급을 보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 지급청구 거절통지

보증인이 보증상 지급청구가 일치하는 지급청구가 아닌 것으로 결정할 때 또는 구상보증상 구상보증인이 지급청구가 일치하는 지급청구가 아닌 것으로 결정할 때에는 먼저 그의 위임인에게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하자에 대한 권리포기를 구하는 절차를 취하여 위임인과 교섭할 수 있다.⁷²⁾

간접보증에서 불일치한 지급청구의 경우에 지시당사자가 하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보증인이나 구상보증인은 독자적으로 그 하자에 대하여 권리포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⁷³⁾ 직접보증에서 불일치한 지급청구의 경우에 보증신청인이 하자에 대한 권리포기를 선언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이 그에 따라 지급을 개시한다.

URDG 758은 지급거절 통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즉시 원격전송으로 만약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다른 신속한 수단으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⁷⁴⁾ 서류는 제시인의 재산이므로 보증인이나 구상보

71) URDG 758 제22조. 보증인은 일치하는 지급청구의 사본과 그 관련서류의 사본을 지시당사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구상보증인에게 지체없이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구상보증인이나 지시당사자는 그러한 전달이 있을 때까지 지급이나 상황을 보류할 수 없다.

72) URDG 758 제24조 제a항, 제b항.

73) URDG 758 제24조 제c항.

74) URDG 458 제10조 제b항.

증인은 지급 거절된 서류를 제시인에게 반환하거나 제시인을 위하여 보관하거나 기타 제시인의 합리적 지시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IV. 청구보증의 지급 관련 대응방안 고찰

1. 청구보증의 성립과 지급약정에 따른 유의점 및 대응

1) 기초계약 체결 시

기초계약의 당사자(보증신청인과 수익자)는 기초계약 체결 시에는 거래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서상에 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내용해석의 기준이 될 준거법에 관한 규정과 분쟁의 발생 시 해결방법 등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는 것이 요구된다.

기초계약에서 청구보증 성립을 위해서 발행조건을 합의하고 부당한 청구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는 지급조건에 대한 협상을 하게 된다. 이 때 보증신청인은 청구보증을 제공함에 있어서 수익자에 의하여 부당하게 청구되어도 법원에 의해 구제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고 보증서에 명시할 조건을 협의해야 한다.

2) 보증계약 체결 시

기초계약에 근거하여 보증서 내용에 포함될 보증금액, 제시되는 서류의 종류와 내용 그리고 유효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청구보증의 특성상 당사자는 지급조건을 보증서상에 명시하여 그 조건을 서류적으로 제한해야 하며 은행이 기초관계에 따라 특정의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비서류적 조건을 자제해야 한다. 유효기일이 없는 청구보증은 일반의 채권 소멸시효에 걸릴 때까지 유효하게 되므로 유효기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⁷⁵⁾

75) Michael Rowe, *op. cit.*, p. 72.

가. 청구보증의 개설 장소

청구보증계약 체결 시 보증신청인과 수익자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므로 청구보증 개설 장소에 관한 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따라 보증개설을 의뢰해야 한다. 청구보증에 관하여 직접보증 또는 간접보증으로 이용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보증신청인과 수익자가 특정 국가의 은행을 보증인으로 약정하는 경우, 청구보증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다면 준거법과 재판관할에 대한 선택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나. 보증의 조건 협상

보증인이 고객의 계정과 위험에 따라 보증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면 발행 시점에서 보증인은 보증의 조건(terms and conditions of the guarantee)에 대한 협상을 해야 한다. 보증인은 보증서상에 명시된 규정에 모호성이 있다면 그 문구나 규정내용에 관하여 거절요청을 하거나 조건변경을 요구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모호한 보증 규정으로 인하여 부당한 지급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보증인은 정확한 보증금 지급을 위하여 고객과의 분쟁발생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보증인은 보증서상 제시되는 서류가 과도하게 복잡한 내용을 포함한 서류가 제시되었을 경우에 그 보증조건에 따라 일치하는 서류심사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보증인은 URDG 758에 따른 청구보증의 형식 또는 표준 보증은행 서식을 선호하게 된다.⁷⁶⁾

3) 청구보증서에서의 지급약정

가. 지급청구권자의 지위변경시 위임장을 통한 확인

청구보증서상의 지급청구권자는 수익자이다. 수익자의 법인격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어, 그 결과 수익자의 법인격이나 형식적인 지위에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는 수익자의 신원 확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수익자의 형식적인 지위가 변경되면 청구보증이 사기에 의한 부당한 청구의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청구보증에서 달리 요구하는 특정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으면 보증서의 구문에 따라 결정되며 보증인은 수익자에게 지급할

76) Roeland F. Bertrams, *op. cit.*, p. 86.

의무가 있고 수익자에 의해 지정된 대리인에게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⁷⁷⁾ 이때 보증인이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 위임장을 요구하기도 한다.⁷⁸⁾ 대리인이 갖는 권한은 만료일이전에 지급청구가 이루어져야 유효하다.

나. 청구보증서의 반환

청구보증상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보증이 종료된 경우에 수익자가 여전히 보증서 또는 변경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보증은 종료된 것이며, 수익자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⁷⁹⁾ 따라서 보증서 조건에 보증서의 반환 규정을 명시하여 보증이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지급청구 시도를 방지 방지할 수 있다. 청구보증서의 반환이 필요한 이유는 보증서 자체가 고유의 가치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보증 종료의 증거방법으로 청구보증서의 반환을 명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2. 청구보증의 지급청구와 사후처리에 따른 유의점 및 대응

1) 청구보증의 정당한 청구

가. 완전한 제시를 위한 예고

보증인과 구상보증인이 불완전한 제시를 받았을 경우에, 이때 거절하거나 완결될 때까지 보관하거나 하는 선택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시는 완전해야 하지만 제시인이 추후에 완결될 것을 제시상에 표시한 경우에는 보증인이 그 제시를 거절하지 않는다.⁸⁰⁾ 그 결과 제시가 완결될 때까지 지급청구 심사가 시작되지 않는다.⁸¹⁾ 실무상 수익자는 제시인으로서 반드시 완전한 제시를 해야 하지만, 제시의 완전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추후에 일치하는 제시로 완결하겠다는 예고를 하여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77) CA Amsterdam, January 1987, KG 1988, 300.

78) *Cass.*, 24 March 1992, D. 1993 Somm. p. 99.

79) URDG 458 제24조, URDG 758 제25조 제b항.

80) URDG 758 제14조 제b항.

81) URDG 758 제20조 제a항, 대한상공회의소·ICC Korea, 전게서, p. 163.

나. 만료장소와 지급청구 제시장소의 일치

청구보증에서 만료장소와 서류 제시장소가 별도로 구분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만료일 이전에 만료장소와 수익자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장소를 일치시켜야 한다. 모든 신용장은 유효기일과 지급, 인수를 위한 서류 제시장소, 또는 자유매입 신용장을 제외하고 매입을 위한 서류 제시장소를 정해야 한다.⁸²⁾ 청구보증이나 신용장의 경우에도 그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면 보증인이나 개설은행에게 문의하여 조건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2) 청구보증의 부당한 청구

가. 부당한 청구 방지를 위한 정지조건의 명시

수익자는 보증의 발행 시부터 또는 보증에서 규정하는 그 후의 시기 또는 사건시부터 지급청구를 제시할 수 있다.⁸³⁾ 청구보증은 보증서 지급조건에 일정한 정지조건을 명시하여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지조건은 보증서 발행일로부터 발효되는 보증서의 지급청구 효력(발효일)을 지연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정지조건을 보증조건에 명시하여 수익자의 부당한 청구로부터 보증신청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

나. 보증신청인의 반대통지 규정의 도입

청구보증에서도 보증신청인의 반대통지 규정(applicant notice of objection)이 요구된다. 이 규정이 ISP98⁸⁴⁾에 명시되어 있지만 화환신용장통일규칙과 청구보증통일규칙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증인이 불일치한 제시에 대하여 지급한 경우 보증신청인은 보증인에게 지체없이 신속한 수단을 이용하여 적시에 통지하여 반대의사 및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반대통지는 보증인에게 부당한 결제에 대하여 상환을 거절한다는 보증신청인의 의사 표시가 된다. 보증인 입장에서 반대통지로 인하여 보증인이 사실판단에 따르는 주관적 판단위험을 배제시켜 줌으로써 지급의 객관적 기준을 제

82) UCP 600 제6조 제d항.

83) URDG 758 제4조 제c항.

84) ISP98 제5.09조.

공받는 기회가 된다. 또한 보증신청인의 상환거절에 대하여 보증인이 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장점이 있다.

다. 제3자의 발행서류 제출 요구

수익자의 지급청구 서류의 요건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지급청구 요건에 지급 청구서류 이외에 제3자 발행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조건을 삽입하는 방안이다. 제3자 발행서류는 화환신용장의 선적서류와 같이 형식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서류조건으로 규정하는데 따르는 문제점도 있다. 수익자의 부당한 청구를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기초거래에서 채권자가 우위를 점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⁸⁵⁾ 따라서, 제3자 발행서류 제출 조건은 통상적인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는 지표로만 사용되도록 한정하여 보증서에 명시하여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청구보증의 지급청구 사후처리

가. 연장 또는 지급의 적극적인 활용

무역거래 목적과 상업적 이익에 근거하여 당사자 사이에 체결되는 기초계약은 그 계약의 최종단계까지 계약 불이행이나 계약중단을 예상하고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을 것이다. 수익자는 보증신청인이 계약이행을 해태하는 경우에 연장 또는 지급의 선택부 지급청구를 활용하여, 계약 불이행이 치유 가능할 경우 상당한 유예기간을 주어 불이행을 치유하고 거래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장 또는 지급청구를 실무상 이용하는데 수익자 입장에서 단순히 지급청구를 요청함으로써 보증금으로 지급받는 보상금액보다 완전한 계약이행의 결과에서 보상받는 것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청구보증을 발급하는 보증인도 계약 불이행에 따른 기초계약의 분쟁에 개입되길 원하지 않는다. 수익자는 보증신청인과의 분쟁을 피하고 원만한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장 또는 지급청구를 활용할 수 있다.

85) 김상만, 전계서, p. 68.

나. 기초계약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의견서 활용

청구보증의 지급조건이 기초계약의 불이행이 전제되지만 보증인은 수익자에 의한 지급청구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보증을 발행하며 기초계약 당사자는 기초거래의 완성을 통하여 거래이익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입장일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거래에 있어서 보증신청인과 수익자가 체결하는 기초계약의 법적 유효성을 확인하는 법률의견서를 활용할 수 있다. 국제거래에서 당해 거래에 관련된 보증신청인의 국가와 수익자 국가의 변호사가 발행하는 법률의견서를 일방의 당사자에게 제출하는 정지조건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다. 보증신청인과 수익자간에 보증계약의 조건에 정지조건을 부가함으로써 계약이행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V. 결 론

청구보증은 국제무역거래에서 인적담보 수단으로 전통적인 보증의 부종성을 제거하여 채권자 입장에서 기초계약상 채무자의 계약이행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청구보증은 기초계약상 채무자의 계약 불이행 발생시 보증서 조건에 일치하는 제시로 보증인에게 지급청구를 하면 기초계약과 독립적으로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보증인의 지급약정이다. 채무자의 불이행에 대한 외부적 사실을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서 지급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제시로 보증금이 지급되므로 수익자에 의한 부당한 청구의 문제도 있다.

청구보증서 발행을 통하여 보증신청인은 보증서 지급청구 요건과 관련된 규정을 숙지하여 부당한 청구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초계약이행에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익자는 청구보증의 이용으로 계약 불이행시 보증금을 청구하기 보다는 계약을 이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최종적으로 기초거래를 완성하는데 청구보증 규정을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청구보증의 발행 목적인 계약이행을 위해서는 보증서 지급조건에 기재될 관련 규칙을 숙지하여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지급조건을 협의하여 계약적 위험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청구보증의 성립요건

으로 보증계약 체결 시에 보증서상에 계약이행을 위한 지급조건을 서류상 명시하여 그 조건을 서류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보증인은 모호한 보증 규정으로 인하여 부당한 청구 위험이 존재하므로 그 문구나 규정내용에 관하여 거절요청을 하거나 조건변경을 요구해야 한다.

둘째, 청구보증서의 지급약정에서 수익자의 법인격이나 형식적인 지위가 변경되면 부당한 청구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급청구권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증이 종료된 경우에 수익자가 보증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보증은 종료된 것이며 수익자의 지급청구 권리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증서 조건에 명시해야 한다.

셋째, 청구보증의 지급청구에서 일치하는 제시 규정을 활용하여 실무상 수익자가 일치하는 제시로 완결하겠다는 예고를 함으로써 불일치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정지조건을 보증 조건에 명시하여 부당한 청구로부터 보증신청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보증신청인의 반대통지 규정과 제3자 발행서류 제출 조건을 활용하여 불이행의 실질적인 확인 기능을 부여하고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넷째, 청구보증의 지급청구 사후처리 방안으로 기초계약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률의견서를 활용하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행의 유효성을 재확인하는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또한 연장 또는 지급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계약 불이행을 치유하는 유예기간을 제공받고 기초계약을 최종적으로 이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청구보증을 이용하는 당사자들이 청구보증의 본질과 보증조건에 일치하는 지급청구 요건을 파악하여 실무에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불일치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이행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유리한 지급조건을 협상하여 보증서상에 명시함으로써 부당한 청구 위험을 감소시키고, 보증서 발행에 따른 위험을 줄임으로써 청구보증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고 또한 계약 불이행 없이 기초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상만, 국제거래에서의 독립적 은행보증서, 신인류, 2002.
- 김선국, “독립적 은행보증의 독립성 -대판 1994.12.9선고, 93다 43873판결을 중심으로-”, 경남법학, 경남대학교법학연구소, 제11집, 1996.
- _____, “독립적 은행보증의 법리 : 그 기본특성을 중심으로”, 재산법연구, 한국재산법학회, 제25권 제1호, 2008.
- 대한상공회의소·ICC Korea 국제금융위원회, ISP98 보증신용장통일규칙 공식 번역 및 해설, 2008.
- 대한상공회의소·ICC Korea, ICC 청구보증통일규칙, 2010.
- 박석재, “신 청구보증 통일규칙(URDG 758)의 주요 내용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51권, 2011.
- 박세운·한기문, “보증신용장통일규칙과 청구보증통일규칙 비교분석”,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51권, 2011.
- 박세운·한기문·허해관, “ICC 『청구보증통일규칙』 개정 동향 : 제3차 개정 초안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지, 제34권 제4호, 2009.
- 석광현, “국제적 보증의 제문제”,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17권, 2002.
- 오원석·허해관·김중년 공역(Roy Goode 저), ICC국제상업회의소 청구보증통일규칙 가이드, 2008.
- 채진익, “URDG 하의 지급청구를 위한 제시요건과 그 일치성 기준”,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50권, 2011.
- 한국수출입은행, 영문국제계약해설, 2011.
- 허해관, “청구보증상 지급청구와 지급 : URDG 758을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51권, 2011.
- Affaki Georges and Goode Roy, *Guide to ICC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URDG 758*, ICC Pub. No. 702E, 2011.
- Affaki Georges, *ICC Uniform Rules on Demand Guarantees: A User's Handbook to the URDG*, ICC Publication No. 631, July 2001.
- Bertrams Roeland F., *Bank Guarantees in International Trade, Fourth*

Edi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13.

Chang-soon Thomas Song, “When discrepancies should and shouldn't matter”, *DCInsight*, Vol 15 No 3, July–September, 2009.

George N. D., “Four report on guarantee and the URDG revision”, *DCInsight*, Vol 16 No 2, April–June 2010.

_____ N. D., “Should a 'statement of breach' be required in the URDG”, *DCInsight*, Vol 15 No 2, April–June 2009.

Goode Roy, “ICC approves revised rules on demand guarantees,” *Documentary Credit Insight*, Vol.16, No.1, 2010.

Ransier Glenn, “URDG 758 has benefits for all parties”, *DCInsight*, Vol 16 No 2, April–June, 2010.

UNCITRAL, “Stand-by letters of credit and guarantee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CN.9/361*), 1992.

ABSTRACT

A Study on Utilization by the Demand Guarantee for the Underlying Contract Performance

Jeon, Jae Woong
Yu, Kwang Hyun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examining the formation requirements and notes for concluding the guarantee contract of minimizing interests and conflicts with the concerned parties by examining issues related to the legal relation and demand payment in the concerned parties and by figuring out the provisions of conformity related to the requirements for demand payment pertinent to the documentary provision in relation to characteristics of demand guarantee.

What the concerned parties of using demand guarantee grasp the requirements for demand payment of being compliant with the essence and the guarantee condition of the demand guarantee will lead to possibly preventing a dispute caused by disagreement and being secured the fulfillment of underlying contract.

To fulfill a underlying contract that is the objective of issuing the demand guarantee, an effort is needed that minimizes a contract-based risk and a cost by being fully aware of a relevant rule that will be recorded in the terms of payment in the demand guarantee, by reflecting the interests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 and by discussing the payment terms.

Key Words : URDG 758, Demand Guarantee, Demand Payment,
Underlying Contract